

# 제일기획, 기업지배구조헌장

## [전 문]

제일기획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의 초석이 되어줄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본 헌장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와 감사의 감독 아래 경영진은 책임경영을 수행하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 1장 주 주

주주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 1-1 주주의 권리

1.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분배참여권
- 주주총회참석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등 주요 사항들은 주주총회 등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 정관의변경
- 합병, 영업양수도및기업의분할
- 해산
- 자본의감소
- 주식의포괄적교환및이전등

3.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하여 법에 따라 요구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3.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고 그 거래내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1-3. 주주의 책임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 제 2장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2-1. 이사회 기능

1.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산하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 2-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1. 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 및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단,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회사는 가능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사는 특정 성별, 연령, 종교, 국적, 인종, 장애 여부, 교육 수준 등의 요소에 따라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6.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3. 사외이사

1. 사외이사는 회사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해야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회사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6.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 2-4. 이사회 운영

1.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2.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안건 및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3.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5. 이사회내위원회

1.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이사회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이사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 등은 명문화된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한다.

## 2-6.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2-7. 이사의 책임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3.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2-8. 평가 및 보상

경영진의 경영활동내역은 공정하게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상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 3장 감사기구

### 3-1. 내부감사기구

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로 하여금 아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는 아래의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과 주주총회에의 보고
  - 기타 법령 및 정관 등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3-2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3.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장 이해관계자

1.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5.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 제 5장 공 시

1. 회사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공시 정보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3. 회사는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관련법령 및 공시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부 칙 >

1. 본 헌장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헌장은 2024년 12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